

서울특별시

호

문
령

제정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156 / 전송 731-6562

문서번호 : 법무02124- 1062

시행일자 1992. 7. 7

경유

수신 (제 1 안) --- 내부결재

참조

제목 훈령발령

| | | |
|--------|-----|-----|
| 취급 | | 시 장 |
| 보존 | | |
| 기획관리실장 | 전경 | 7 |
| 법무 담당관 | 7 | |
| 법제 계장 | 7 | |
| 기안 | 이충무 | X |

별조

훈령 제 24 호

1. 서울특별시재정투용자기금관리운용규정을 별안과 같이 시보에 개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첨부 : 훈령안 1부, 끝.

(제 2 안)

수신 : 공보관

제목 : 시보개재

1. 서울특별시재정투용자기금관리운용규정을 시보에 개재 발령할 것.

첨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25 호 2부, 끝.

서울특별시장

(제 3 안)

수신 : 예산담당관

제목 : 훈령발령

1. 예산 10220-800(92. 4. 16)호와 관련임.

1. 서울특별시재정투용자기금관리운용규정을 별점과 같이 시보에 개재 발령하였으나 시행에 작오 없도록 할 것.

첨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26 호 1부, 끝.



서울특별시장

서울특별시 1992년 7월 1일 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2년 7월 1일

서울특별시장

상임

서울특별시훈령 제7호

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관리운용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재정부융자기금설치조례(이하 "조례"라 한다)와 조례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과, 서울특별시재정부융자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금운용관의 지정) ①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
② 기금출납명령관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공무원은 예산담당관으로 한다.

제3조 (기금운용계획의 편성) 기획관리실장은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명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편성지침을 수립, 매년 9월 20일까지 관련회계 및 기금의 주관과장, 사업소장, 구청장(이하 "관련부서의 장"이라 한다)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조 (기금운용계획의 작성) ① 관련부서의 장은 제3조의 기금운용계획편성지침에 의거 예탁 및 융자요구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첨부,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부융자기금운영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의 심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의견이 끝난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제5조 (수정기금운용 계획) ① 기금운용계획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수정요구서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수정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4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제6조 (기금운용계획의 통지) 기획관리실장은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련부서의 장 및 기금위탁관리기관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조 (기금의 집행) ① 관련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즉시 월별예탁계획서와 월별자금소요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기획관리실장은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월별예탁계획서 및 월별자금소요계획서를 참작하여 월별, 분기별 자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③ 예산담당관은 제2항의 월별, 분기별 자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심의회의 실의 의견을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,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 (징수결정 및 통지) ① 기금출납공무원이 세입의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부의 징수결정액판을 기록하고 납부서를 발급, 통지하여야 한다.
② 착오,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을 취소,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제9조 (수입금의 취급 및 기장) 기금위탁관리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기금출납공무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입 일계표를 작성하고 세입정리부를 기장한다.

제10조 (장부 및 서식) ① 기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

1. 세입, 세출 총괄부 (별지 제1호 서식)
2. 세입정리부 (별지 제2호 서식)
3. 세출정리부 (별지 제3호 서식)
4. 예수금관리대장 및 차입금관리대장 (별지 제4호 서식)
5. 융자금관리대장 (별지 제5호 서식)
6.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

② 장부 및 서식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.

제11조 (심의회의 운영) ① 예산담당관은 조례 제9조 제1항 각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요구서(별지 제6호서식)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 때에는 심의의결서(별지 제7호 서식)를 작성,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 (결산서의 작성) ①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이 작성한다.

② 예산담당관은 수입, 지출에 관한 결산사항과 기타 관련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.

제13조 (결산설명자료) 관련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 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, 통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세입·세출총괄부

| 일자 | 작 요 | 수입액 | 지출액 | 잔액 |
|----|-----|-----|-----|----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
(별지 제1호 서식)

세입정리부

과목(항) (세항) (목)

| 일자 | 작 요 | 결 의 서 번 호 | 운용계획액 | | | 집 행 액 | | | 운용계획액 과 집행액 과의 차액 |
|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당초 운용 계획 액 | 증 감 액 | 계 | 징수 결정액 | 수입액 | 잔 액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
(별지 제3호 서식)

세 출 정 리 부

| 년 월 일 | 증 번 호 | 서 호 | 채 주 | 적 요 | 운 | 용 | 배정액 | 자출액 | 잔 | 예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|-----|-----|---|-----|
| | | | | | 계획서 | 계 | | | | 금 대 |
| | | | | | | | | | | |

(별지 제4호 서식)

예수금 및 차입금 관리대장

| 과 목 | 예수(차입)년도 | | | | 번 호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
| 사업명칭 | 예수(차입)금액 | | | | | | | |
| 예수(차입)기관 | 예수(차입)년월일 | | | | | | | |
| 이 울 | 당 초 | 19 . . | 19 . . | 19 . . | 19 . . | 19 . . | 19 . . | 19 . . |
| | % | % | % | % | % | % | % | 의결일자 19 . . |
| 예수(차입)조건 | 년거치 | 년상환 | 회률 | 비 고 | | | | |
| 예 수 상 환 | 년 월 일 | 년 월 일 | 원 원 원 원 | 고 | | | | |
| (차입) | 년 월 일 | 년 월 일 | 원 원 원 원 | | | | | |
| | 년 월 일 | 년 월 일 | 원 원 원 원 | | | | | |

(전 면)

| 상 환 예 정 | | | | | 상 환 현황 | | | | |
|---------|-----|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|-----------|
| 년 월 일 | 원 금 | 이 자 | 개 | 미 찬 상 환 액 | 년 월 일 | 원 금 | 이 자 | 개 | 미 찬 상 환 액 |
| | | | | | | | | | |

(후 면)

<별지 제5호 서식>

융자금관리대장

| | | | | | | |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|
| 과 목 | | 융자년도 | | 내역번호 | | | |
| 사업명칭 | | 융자금액 | | | | | |
| 융자기관(회개) | | 융자년월일 | | | | | |
| 이 율 | 당초 | 변 경 | | | | 외결번호 | 제 호 |
| | | 19 . . | 19 . . | 19 . . | 19 . . | | |
| 융자조건 | 년거치 | 년상환 | 회률 | 번호 | 비 고 | | |
| | 년 월 일 | | 원 | | | | |
| | 년 월 일 | | 원 | | | | |
| | 년 월 일 | | 원 | | | | |
| | 년 월 일 | | 원 | | | | |

(전 면)

| 상 환 예 정 | | | | | | 상 환 현황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|---|---|---|---|---|-----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년 월 일 | 원 | 금 | 이 | 자 | 계 | 미 | 상 | 환 | 년 | 월 | 일 | 원 | 금 | 이 | 자 | 계 | 미 | 상 | 환 |
| | | | | | | 잔 | 액 | | | | | | | 잔 | 액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(후 면)

<별지 제6호 서식>

서울特別市財政投融資基金 運用에 대한 審議要求書

件 名 :

위 事項에 對하여 審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9

添附書類 :

1. 中期財政計劃 및 事業計劃書
2. 成果內譯書
3. 事業費明細書
4. 償還計劃書
5. 其 他

豫 算 擔 當 官

서울特別市財政投融資基金運營審議會 委員長 貴下

<별지 제7호 서식>

審 議 議 決 書

件 名 :

서울特別市財政投融資基金 運用事項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審議 議決함

決 定 內 謂

| 主 題 | 議 決 事 項 | 備 考 |
|-----|---------|-----|
| | | |

199

委員長

인

副委員長

인

議 員

인

委 員

인